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 11.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2007.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계획에 관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나. 부지매입 및 건설배경

○ 사업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 간의 주차 다툼이 빈번한 지역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건의가 폭증하는 지역임.

○ 당사업부지는 장방형이며 주차장 건설을 위한 유희부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면 배치에 유리하며 종교 부지로서

소유자 재단법인 마리아회 유지재단의 매각동의가 있었고, 또한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분석 결과 동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승인하였음.

다. 공영주차장 타당성 검토

- 사업지 동측 30m지점에는 망원동의 중앙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한마음길(폭10m)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서측 남북으로 새나래8길(폭8m)은 재래시장인 망원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차량통행 불편.
- 사업지 주변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주차문제가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며, 망원시장 이용객의 추가 수요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함.

라.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계획

○ 사업개요

구 분		망원동 공영주차장
위 치		망원동 403-2
면 적		3,152.4㎡ (약950평)
건 설 규 모		철골자주식 2층3단 주차면 300대
소요예 산	계	18,378백만원 (시비:7,559 구비:10,819)
	부지매입	12,289백만원
	건 설 비	6,089백만원
재 원 기 준		구 주차장특별회계 및 시보조금
사 업 기 간		2008. 1월 ~ 2008.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 두 호)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지는 마포구 망원동 403-2번지로 면적은 3,125㎡이고 소유주는 재단법인 마리아회이며 종교부지로 부지내 시설로는 1970년도 준공 3층건물과 1991년도 준공 2층건물이 있으며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임.

주차장 건설계획은 철골 자주식 2층3단으로 면수는 300면이며 총 소요예산은 18,378백만원으로 부지매입 12,289백만원, 건설비 6,089백만원으로 재원은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및 시보조금 부지매입비는60% 건설비는40% 으로 총당하고자 함.

입지여건은 망원동지구 대부분이 격자형도로로서 접근성이 양호하나, 사업지 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도로폭이 6m로 차량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며, 동측 30m지점에는 도로폭이 10m인 한마음길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서측 남북으로는 도로폭이 8m인 새라내 8길이 있으나 재래시장인 망원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망원동 일대는 대다수가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차 문제가 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들간의 주차 다툼이 빈번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폭증하는 실정임.

동사업지는 정방형이며 주차장건설을 위한 유희부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면 배치에 유리하나 주차면수 300면은 향후 주택가 밀집지역에 건설예정인 공원형주차장건설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주차장건설도 고려하는 것인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